

○ 등록금 · 사용료 책정표

1) 수강신청을 한 학사학위취득 유예자(졸업유예자)의 등록금 책정표

신청학점	(학기제) 등록금	(학점제) 등록금	
1학점부터 3학점까지	「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」 제4조 (징수방법) ⑦항의 수업연한 초과자에 대한 등록금 기준을 적용	학점당 등록금 책정	
4학점부터 6학점까지			등록금의 1/6
7학점부터 9학점까지			등록금의 1/3
10학점 이상			등록금의 1/2
		등록금의 전액	

2)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학사학위취득 유예자(졸업유예자)의 사용료 : 100천원